#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5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 · 윤후덕 ·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도모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 진,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.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국 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 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	제6조(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
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	의 수립 등) ①
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	
성·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	
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	
산업육성기본계획(이하 "기본	
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	
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
	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
	한 사항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